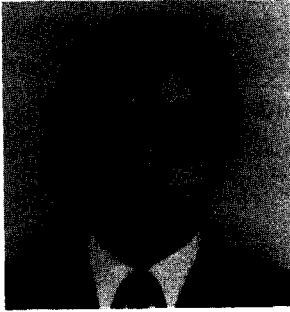


# 酒稅法改編과 業界의 對應



鄭 憲 培

(中央大 經營學科教授·經博)

## 目 次

1. 酒稅法改編：必然인가 偶然인가?
2. 酒稅法改編의 大前提
3. 理想的 酒稅法과 業界의 現實
4. 業界의 認識·轉換의 必要性和 限界
5. 業界의 對應戰略
6. 結 言

## 1. 酒稅法改編： 必然인가 偶然인가?

年初부터 불어닥친 주세법개편설로 酒類業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물론 개편될 내용이 개개기업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展開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단순한 궁금증의 수준에서 어찌면, 自己企業의 生存 또는 發展에 決定的인 影響을 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개편에 대한 個別企業의 立場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주세법이 개편이 된다는 事實은 어쨌건 기존체제의 變化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주류업체가 그 影響권 내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주류업체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주세법개편은 과연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세계개편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체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偶然하게 개편이 고려되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볼때 전자가 더욱더 설득력이 있는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주류산업의 체제가 지난 수십년 동안 면허와 통제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意見은 정부, 기업, 소비자 할것없이 모든 사회구성체들의 共感帶였기 때문이다.

問題는 기왕에 개편되는 주세법이 향후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社會現實을 고려하여 生産者, 流通業者, 消費者가 다같이 同等하게 보호받는 시장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酒稅法改編을 위한 基本的 考慮事項은 무엇인지, 酒類産業과 酒稅法은 어떠한 關係를 定立해야 하는지, 그리고 酒稅法 개편에 대한 業界의 對應姿勢는 어떠한지 本人의 意見을 피력하고자 한다.

## 2. 酒稅法改編의 大前提

### ● 産業構造改善에 기여하여야 한다.

기존 주류산업을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각적인 각도에서 고찰될 수 있겠지만, 주류산업 성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산업개편을 위한 정책의 내용은 기존 산업조직체들이 균형발전하여 공존공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면허개방 및 대외시장개방 등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갈 경쟁개념의 도입에 따른 산업내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개편이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관주도형'의 산업규제로 충분히 개발, 발전되지 못했던 산업자율화 기능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되어 국내적으로 합리적인 산업체제가 구축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産業의 均衡發展: 주류산업의 개편방향은 산업구성원들이 균형발전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업체, 인기주와 비인기주 등 사업영역을 막론하고, 나뉘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과 제도적으로 특정기업에 불리했던 요소들은 과감히 수정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부문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나. 産業의 體質改善: 주류산업의 개편방향은 산업체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면서 수입개방, 신규면허개방 등 대외적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편정

책의 내용이 이러한 체질개선을 실천해 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産業自律化誘導: 주류산업의 개편방향은 주류산업 스스로가 주류의 생산-유통-소비에 관련된 모든 면에서 자율적으로 통제·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즉, 주류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기능이 보장되어 산업조정적 자율 통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주류업체들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류산업 발전의 동참자 입장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대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유명주류 생산업체들이 스스로 생산량,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공동적으로 대사회 활동력을 강화하면서, 품질등급결정 등을 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게 하는 등의 자율조정에 성공하여 온 사례가 산업자율화 정책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하는 귀감이 될 것이다.

### ● 流通市場 體制整備

주류산업의 제조법면허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탈세의 온상인 대형주류 제조회사의 인기주류에 비인기주류의 덤핑시장과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는 유통체제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시장 진출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관계로 영국, 미국 등의 주요주류 업체들은 각국 정부들의 로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유통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2개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도매상들에 대한 영향권을 더욱더 크게 행사할 수 있도록 90년 1월 1일자로 면허의 수가 201 개가 늘어났고 그와 동시에 양주 및 일반도매업의 구조가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통시장 개방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서 이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볼때 주세법이 유통제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현행의 주세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해서 국세청이 이를 간접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 만큼 차제에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지 우리나라의 유통체제가 대외시장 개방과 국내 유통제도 합리화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같이 주류산업정책, 특히 제조법 관련 탁·약주 등의 유통체제가 미약하니 만큼 이에대한 보완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전반적인 고려 자체는 보다 세부적인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볼때 여러가지 전반적인 또는 개괄적인 차원에서 부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아울러 지금 의제판매업 또는 각종 소매업의 주류산업에 대한 주류유통제도의 합리화에 있어서의 주안점은 과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각종 주류들이 유통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에 얘기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각종 주류에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 公正去來體制構築: 주류유통경로에 있어 공정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류유통경로와 직결되는 인기주류시장 구조를 보면 대규모 주류제조회사일수록 다양한 주류를 생산하는 제품계열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 제품들은 인기 품목들로서 막강한 시장점유율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인기제품 집중현상은 기존 유통경로 특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주류도매업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기제품에 비

인기주류제품을 끼워서 팔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특정대기업의 시장지배력행사는 유통단계에서 불공정하고도 불법적인 거래(무자료시장)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주류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영국, 미국, 불란서, 이태리 등 세계적인 주류제조 판매회사들은 자국정부를 동원하여 현 우리나라 주류유통구조가 대형인 소수 특정주류업체들에 의해 거의 완전무결하게 통제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의 제품판매가 이러한 유통구조에 의해 차단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90년 1월 1일부로 국세청이 발표한 도매업면허의 전면 자유화는 대외적으로는 상당한 환영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가들이 각종 도매상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3개 주류제조회사(소주, 맥주, 기타 주류제조)로부터 거래약정서를 요구 하므로서 인기제품을 생산하는 대형제조사의 계열화를 촉진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함께 90년 1월 1일부터 양주 및 일반주류도매업 면허가 통합되므로 인해 주류도매업자들은 외형적으로는 모든 주류를 공평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형주류 회사들의 공급조절에 의해 정부에서 의도한 유통시장 개방의 효과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

나. 流通組織의 大型化 推進: 앞서 유통시장 체제정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유통조직의 특성은 과거 양주도매업과 일반도매업이 양분화되어 있고 슈퍼연쇄점 면허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을때부터 슈퍼, 연쇄점의 경우에는 조직이 대형화 되어서 많은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관계로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나 주류전문 도매업의 경우에는 양주도매업과 일반도매업을 망라해서 특정인기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관계로 대형제조업체에 의존하여 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주류 유통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만약 유통조직이 대형화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조업체와 협상을 하고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해 제품을 배급하는 조직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공정거래체제의 구축에 못지않게 유통조직의 대형화도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통조직의 대형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슈퍼나 연쇄점이 기타 식료품과 잡화류를 취급하는 것처럼 주류를 제외한 다른 사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택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인위적으로 기존의 유통업체들을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조류로 볼 때 채택하기는 극히 힘든 방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은 현재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도매업자들을 전문화된 대형 법인으로 전환시켜 대형주조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상거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관점에서의 조치가 고려되지 않으면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장개방 추세와 그리고 향후 몇년 이내에 직면하게 될 자본자유화에 따라 우리나라 주류유통업이 자멸하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유통조직의 대형화는 아울러 지금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지역의 제한 역시 어느정도 수준으로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小賣業 統制強化: 유통이 개방되고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유통시장체제정비를 위해 고려할 또하나의 요소는 소매업의 통제 강화이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세원확보 또는 세수의 안정적인 그리고 확실한 징수를 위해서 도매업 유통체제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으나 사실상 이러한 도매업 유통체제가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개방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실질적으로 선진국형으로 가는 입장에서 고려해야될 요소는 소매업부문 통제강화이다. 소매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술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할때 술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술의 소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통제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선진여러국가에서 알콜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등의 문제, 그리고 미성년에 대한 주류 판매규제가 강력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것으로 볼때 도매업이 자유화되는 수준 이상으로 소매업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消費者保護次元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 酒類飲用濫用 防止: 술이라는 것이 많은 사회적, 신체적 효용성이 있는만큼 오히려 그 이상의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거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는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다는 점등이 이 술의 효용성이라면, 알콜중독이라든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또는 기타 과다음주로 인한 여러가지 신체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술은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술의 경우에는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진정한 입장에

서의 소비자보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즉, 다시말해서 술은 아무에게나 쉽게 판매되어 진다거나 또는 너무싸서 과다소비가 유도된다거나 해서는 아니되며 또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주류소비가 적극적으로 억제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주류의 소비자보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품들과는 달리 싸지도 비싸지도 않는 고품질의 술을 마셔도 되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에게 실효성이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될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는 주세적인 차원에서 볼때 주세가 너무 높아도 아니되지만 주세가 너무 낮아도 아니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볼때 품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고알콜의 경우에는 소비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저알콜의 경우에는 전체 소비량이 억제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보호적인 차원에서 볼때 주세는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고알콜에는 고주세, 저알콜에는 저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나. 消費者 選擇幅의 擴大: 앞서 언급한 주류음용납용을 방지하는 것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주류를 선택적으로 개성과 기호에 맞게 음용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것이다. 즉, 지금까지 너무 단편적으로 제공되었던 몇가지 종류의 맥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소주, 포도주등이 소비자들에게 소비 강요되었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제조업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급변의 세계개편안은 가능하면 소비자의 개성과 기호, 술의 특성 혹은 음주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세법의 규제범위

자체가 다양한 주류의 생산을 가능하도록 유도되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과도한 품목이 개발됨에 따라 과거에 존재했던 불량주류의 범람과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도 역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측면에서의 고려요소는 최저 주류의 가격이 300~400원에서 30만~40만원 극단적인 경우에는 300~400 만원까지의 선택의 폭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때 가격적인 면에서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종간의 가격격차를 가능하면 줄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원가와 산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 酒類業體들의 社會的責任 實踐誘導: 우리나라 주류산업이 지금까지 국가의 통제속에서 성장해온 관계로 이러한 통제가 오히려 보호상황을 유도하여 사실상 온실에서 성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류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주류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사회적 문제 또는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써왔던가를 생각해 보아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대형업체는 대형업체 나름대로, 소형업체는 그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유지는 거의 대다수가 주류업체가 차지하는 점,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중에도 주류업체 몇몇이 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는것은 전국적으로 또는 전산업적 차원에서 어느정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책임 실천유도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류판매에 따른 부가적인 기금 또는 사회적 기금 자체가 알한중독의 방지, 기타 사회적 주류납용 및 그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 租稅政策 運用의 效率化를 도모해야 한다

가. 關係法規間 位相調整 : 기존의 조세정책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주세법에 관련된 관계법규간의 위상이 재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주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주세사무처리규정이 법적인 체계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 모법인 주세법보다 가장 하위법규인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주류산업과 주류시장에 더욱더 큰 통제력을 작용하여 왔던 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특히 주세법 38조가 규정하는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거의 모든 주류산업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위 법규에 위임규정 하므로서 이러한 위임규정에 의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거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금번 주세개편 때에 고려되어 조세정책 운용의 효율화가 단순한 국세청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재무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정책운용이 다음에 언급하게 되는 세원관리적인 차원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의 산업 또는 국가의 경제, 국민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 또는 산업육성 등의 차원도 주세법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들은 모법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稅收의 安定化 推進 : 주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세원이 되어왔던 만큼 금번 주세개편에 따라서 급격한 세원의 감소 부문에 대한 별도의 고려 또는 앞으로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면서 가장 많은 주세를 부담하고 있는 맥주의 경우 앞으로 급격한 시장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맥주주세에 있어 현재 수준의 세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폭의 맥주주세의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맥주주세가 인하되더라도 맥주의 전반적인 시장성장에 따라서 이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주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혀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만큼, 과연 맥주주세의 인하를 통해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간접세원을 포기해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세의 감면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각 종의 세원자체가 여러가지 입장에서 보다 증대되어야 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맥주주세에 대한 포기는 정부로서는 선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주주세의 경우도 세원의 확보적인 차원에서 볼때 새로운 각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맥주보다 소비량이 많고 맥주에 비해서 고알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주라는 명분으로 해서 저주세를 부담하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실정은 어느정도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회석식소주는 기왕에 정착된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서 주세율의 소폭 증가로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으나 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될 증류식 소주의 경우에는 고주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의 조세 저항이나 실제적인 제조업자들로부터의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소주의 경우에는 회석식과 증류식을 차별화하여 주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고주세를 부과하여 주세부과의 형평성을 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세를 부과하여 산업을 보호 육성 시켜주는 이원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 酒類産業 研究機能의 補完 : 조세정책의 효율화를 한다는 방안에서는 과거의 우리나라 조세정책 하나하나가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 여러가지 정책들이 금번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세원확보적인 차원에서만 고려되었다는 점등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각 제도의 적용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지 않고, 국세청이나 재무부의 일방적인 정책 입안 과정을 통해서 공개토론회 등의 여과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각 업체들이나 국민들은 각 정책의 성안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져 알려지나 하는데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차제에 주세의 전면 개편을 계기로 해서 모든 주류관련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비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을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理想的 酒稅法과 業界의 現實

現想的인 酒稅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이는 酒稅法이 目的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稅源確保가 目的인가, 消費者보호가 目的인가, 관련産業育成이 目的인가 등에 따라 즉, 追求하고자 하는 目的에 따라 주어진 目的을 充實하게 達成하는 制度가 保障

될 경우, 이것이 理想的인 酒稅法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식의 一한가지 방향의 酒稅法存在 目標만 存在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理想的인 酒稅法 體系를 갖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國家의 制度와 組織이 體系化되고 經濟的으로 安定될수록, 소위 말해서 先進國에 가까워질수록 酒稅法의 存在는 다양한 目標성취를 內容으로 하게 된다. 이 경우 多樣한 目標들의 어느 부문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調化롭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作業이 아니다.

部門間的 調化와 均衡을 이루었다고 評價받을 수 있는 酒稅法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나타날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酒稅法이 稅源確保次元이 강조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이제는 消費者保護와 産業의 均衡發展이 지금까지 보다는 더 중요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 보호란 무엇이고, 산업의 균형발전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定義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술을 싸게 마시도록 하자는게 소비자 보호인가, 술이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소비자 보호인가 하는 논란에 접하여 양측이 모두가 나름대로의 論理的 正當性을 갖고있는 것이 事實이기 때문에 양측의 비중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의 강조보다는 부정적인 면의 축소가 보다 용이하게 위험부담없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술을 싸게 해서 소비가 조장되는 것보다 술의 남용을 막아 소비자가 보호되는 것이 社會的으로 볼때 부정적인 면의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주류남용방지가 더욱 더 큰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다.

理想的인 酒稅法에 가장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業界의 現實이다. 이러한 요소가 기존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많은 제약

을 가하게 된다. 즉, 나름대로 합리적인 形態의 酒稅法體系가 設定되더라도 이러한 體系가 기존의 産業 및 市場질서를 크게 해치게 될 경우에도 이를 理想的인 酒稅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産業 및 市場질서를 유지하면서 變化를 추구하는 것은 극히 힘이 든다는 점이다. 과연 어떤 수준의 變化가 理想的인 酒稅法 體系의 形式에 기여할 것인가?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면의 강조가 부정적인 면의 축소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시장개방 연기, 차등주세의 부과 등 제도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부정적 차원의 고려보다는 국내산업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生存發展할 수 있도록 産業支援政策을 강구하는 긍정적 차원의 고려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酒類産業의 現實도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원료 공급자인 農民으로부터 製造·流通·消費에 이르기까지의 연쇄적 관계가 形成되어 있고, 이는 각 단계마다 輸入의 可能性을 內在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消費단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주류산업 유관 부문의 現實이 극히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주류생산원료인 우리나라 농산물은 국제 가격의 2~5 배 가까이 비싸고, 제조업은 제도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한 중소기업의 육성기반이 취약하고, 유통은 영세하여 개인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은 확보되고 있으나 대형화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등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제점이 축소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類型의 理想的인 酒稅法일 것이다.

#### 4. 業界의 認識： 轉換의 必要性和 限界

어떠한 形態의 酒稅法 改編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生産, 流通業界가 銘心해야 할 事項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를 든다면 「기득권의 할애」이다. 기존업체들이 기득권을 할애하지 않겠다면, 또는 「기득권」을 할애하는 시스템을 새로운 주세법이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기의 개편목표를 달성하기는 극히 힘이 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업계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공존공영하겠다는 의지가 업계에 확산되어 있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명심사항은 「공정거래의 意志」이다. 공정거래의 의지가 업계에 확산되어있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발붙일 땅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자연히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도 산업경쟁력은 보다 약화되고, 제품의 전문성, 다양성을 저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業界 認識轉換의 가장 장애요소는 뒤편뒤편해도 수십년간 고착되어온 제도에 의한 산업의 구조 결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業界의 認識轉換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가장최선의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종 면허와 제도적 보호장치가 장기간, 절대적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업계가 피부로 느끼도록 제도가 실천되는 것일 것이다. 이로서 업계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自生力을 키우는 방안장구에 골몰하게 될 것이다.

#### 5. 業界의 對應戰略

비단 금번 주세법개편에 따른 대응전략이라기보다, 새로운 경쟁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의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戰略이 「情報體制構築」이다. 외부환경 적응에 비교적 용이했던 우리나라 주류산업도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각에서 경쟁상황을 점검해야만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정보체제구축」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 사항들이 될 것이다.

- ① 국제적 제품의 성공사례분석 : 완전경쟁체제 하에서 성장한 외국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활용한다.
- ② 시장정보 활용의 체계화 : 기존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점검하여 경쟁사 대응 전략 및 새로운 전략수립에 활용한다.
- ③ 獨占的 Know-How의 확보 : 전문화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에 의한 시장독점 체제를 구축한다.

- ④ 제품 또는 시장의 特化 : 제품 또는 시장다변화를 강구하여 특정시장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한다.

## 6. 結 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제도나 시장상황의 변화에 크게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되는 것일 것이다. 금번 주세개편선편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각종 상황에 대비하여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주류산업에 건전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사람이 방심하면 우리모두 불행초래